

무담보 무보증 대출로 산업 육성 추구

지금까지 다수의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개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 고전을 겪어왔다. 고전을 겪은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매우 미약한 것이 고전을 겪었던 주요인이라 하겠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제제도는 이런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다.〈글/ 최진기 기자〉

“**AI** 중은행이나 종금사 등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할 경우 철저하게 담보를 받아 평가액의 일정부분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에 따라 대출도 하고 있지만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력이 없는 중소 사업자나 컴퓨터와 아이디어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은행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장위상 전무는 현재의 금융제도가 담보력이 없는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기술축적과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에서 공제조합의 설립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1차개정때 공제사업이 추가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공제사업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제사업본부로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후 올해 초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공



▲ 공제조합을 이끌고 있는 장위상 전무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고 건실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이 다양한 대부기능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사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즉,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과 취약한 담보력을 보완하는 신용보증과 이행보증, 자금투자 등 국내에서 유일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특수공제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소프트웨어 수축의 촉진과 신기술 개발 및 벤처기업에 대한 중점적이고 우선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난 극복을 꾀하고 있다. 이는 일반 금융기관이 제조업 중심의 담보위주의 금융관행과 차별성을 지닌 독특한 공제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을 보완해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설립됐다고 하겠다.

기본자금 조성과 운용

공제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을 필두로 ▲조합원의 출자금, 출연금, 공제부금, 예탁금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 출연금, 예탁금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공제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을 통해 조성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해 지난해 정부가 50%, 조합원사가 50%를 분담해 100억원 가량을 조성했으며 2002년까지 공제재원을 1,370억원 규모로 확대해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정보통신부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것이다.

공제조합은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현재 자금 대여, 채무 보증, 이행 보증, 자금 투자 등 4종의 공제 프로그램과 고유목적 사업을 마련해 놓고 있다.〈표〉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여러가지 특징이 있으나 보험적 성격과 금융적 성격의 혼합형 공제제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재원 조성을 근거로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통한 공동 구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보완을 피해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대부금의 규모는 가입자의 출자금과 부금 등의 납부액 가운데 일정액을 기본한도로 정해 대부해 주되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 발전 가능성, 공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부분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자금 대여 및 채무 보증은 적립금의 5배, 이행 보증은 55배까지를 기본 한도로 하고 평가항목이 좋을 경우 ±3을 하게 된다.

A라는 기업이 자금 대여를 받을 수 있는 규모(출자금 100만원과 100만원을 적립했다고 가정)

$$200\text{만원} \times 5 \pm 3(200\text{만원} \times 3 = 600\text{만원}) = 1,600\text{만원 or } 400\text{만원}$$

* 평가된 실적이 좋을 경우 1,600만원, 반대의 경우는 400만원 대부됨



▲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사무실 전경

〈표〉 공제사업 종류 및 공제사유

공제 종류	공제 사유	내용
제1종 공제 (자금대여)	제1호 공제	• 소프트웨어 개발자금 지원(수탁개발, 신기술 등 자체 개발)
	제2호 공제	• 연쇄도산 방지자금 지원(거래업체 부도시 부도여어음등 확인 대출)
	제3호 공제	• 흑자도산방지자금지원(매출채권 회수 장기화시 받을어음 견질대출)
	제4호 공제	• 긴급일시 운영자금 지원
	제5호 공제	• 설비 및 장비 구매자금 지원
	제6호 공제	• 이업종 교류지원
제2종 공제 (채무보증)	제1호 공제	• 정부의 특별지원자금의 배정이 결정된 때
	제2호 공제	• 금융기관(기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
제3종 공제 (이행보증)	입찰보증	• 수탁개발 입찰시 보증
	계약보증	• 수탁개발 계약시 보증
	하자보수보증	• 수탁개발시 하자보수 보증
	선금금보증	• 수탁개발시 선금금 보증
	기타보증	• 설비외상거래 이행 보증, 이행지급보증
제4종 공제 (자금 투자)	제1호 투자	• 벤처기업(신기술 개발 포함) 투자
	제2호 투자	• 수출기업 투자
특별지원 공제	특별지원 공제	• 특별지원 공제
		- 소프트웨어 수출기업 특례지원
		- 벤처 기업 우대지원
		- 고용안정(고용창출) 특례지원

공제제도를 적용받으려면

공제조합에서 운용하는 공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가입을 하고 출자금과 부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한 자이면서 1년이상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정해져 있다.

다만 우수 신기술 지정 또는 각종 공모전 등에서

장관상 이상 수상작의 상품화 및 기능향상 계획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벤처기업 등은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출자의 경우는 1, 2, 3, 4종 공제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 선택할 수 있는데 1회 이상 2,200회 이내로 제한되며 1회에 대한 금액은 100만원이다. 공제부금은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등 6종류로 되어 있으며 42개월간 적립할 수 있다.